

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1. 수정이유

- 조합 운영방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례에 명기하고
- 기본재산은 운영비와 구분하여 계정토록하여 출연금의 잠식을 방지하도록 함

2. 주요 골자

-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, 기업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 운영토록 함
-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
- 보증방법, 보증제한업종, 보증기관 및 보증료, 위약금, 보증채무이행, 구상권 행사 등을 기재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 운영토록 함
- 신용조사를 기업의 경영상태, 사업전망, 시장여건,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토록 함.
- 신용정보를 종합관리 하도록 함
-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
- 조합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방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
- 조합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